

제2939호
2022. 7.2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김영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53호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차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
 제75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7
 제75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 고 시

제2022-6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49
 제2022-68호 :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50

◎ 공 고

제2022-516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위한 공람·공고 52
 제2022-51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위한 공람·공고 54
 제2022-522호 : 마포로5구역(중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5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규 칙]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3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장학생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2. 장학생 인적사항

장 학 생	성 명		학교명	
	생년월일		학 년	
	장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3. 공적개요

--

4.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	동산	연수입	기타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소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판매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로(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div>			
<h3>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h3>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제출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시 제2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사업체현황	기업제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체규모		자산 총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대상업종 및 품목		상시종업원		사업장 면적	건물 : m ² 대지 : m ²	
	업종		품목		사회적기업여부		
담보제공방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 <input type="checkbox"/>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대출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input type="checkbox"/> 5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자금	자금용도		총소요액	용자신청액		중구 기존대출 잔액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처리기간 60 일
------	---	--------------

◆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지역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업규모 (연간예산액)			
신청인원	일반 명,	전문인력 명	지원희망금액 원

◆ 참여기관 개요				
신청 단 체 현 황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O/X)
	소재지			
	*단체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 해당여부 (최근2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뒤쪽)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체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신청서 기재요령

- * 사업분야 : ①사회복지분야 ②보건·의료·보육분야 ③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④교육분야
⑤환경분야 ⑥건설·주택분야 ⑦교통분야 ⑧정보통신분야 ⑨기타분야
- * 사업규모 :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 기재
- * 회 월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 * 단체종류 :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제출서류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생년월일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규모	⑦영업장총면적	㎡	⑧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	⑨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용자 신청내역	⑩실소요금액	⑪용자신청금액		⑫비율(⑪/⑫)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	
확 인 자	
직 명	성 명
	①인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정은행확인	
은행명	
대출	가능·불가
확인자	①인

중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청인 제출서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 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p>[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신청서</p> <p>1. 신청자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보 호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r> </table> <p>2. 장학생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 학 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교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 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학구분</td> <td colspan="3"> <input type="checkbox"/>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td> </tr> </table> <p>3. 공적개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4. 보호자 재산상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부동산</th> <th style="width: 15%;">동산</th> <th style="width: 15%;">년수입</th> <th style="width: 15%;">기타</th> <th style="width: 1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구비서류 : 1. 재학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특기증명서 1통(해당자)</p> </div>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주 소	년 월	일까지(년 월)	장 학 생	성 명		학교명		생년월일		학 년		장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부동산	동산	년수입	기타	비고						<p>[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신청서</p> <p>1. 신청자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보 호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td> </tr> </table> <p>2. 장학생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 학 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 교 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 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학구분</td> <td colspan="3"> <input type="checkbox"/>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td> </tr> </table> <p>3. 공적개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4. 보호자 재산상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부동산</th> <th style="width: 15%;">동산</th> <th style="width: 15%;">년수입</th> <th style="width: 15%;">기타</th> <th style="width: 1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비서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등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제출서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td> </tr> </table>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주 소	년 월	일까지(년 월)	장 학 생	성 명		학 교 명		생년월일		학 년		장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부동산	동산	년수입	기타	비고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주 소	년 월	일까지(년 월)																																																																																
장 학 생	성 명		학교명																																																																																	
	생년월일		학 년																																																																																	
	장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부동산	동산	년수입	기타	비고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주 소	년 월	일까지(년 월)																																																																																
장 학 생	성 명		학 교 명																																																																																	
	생년월일		학 년																																																																																	
	장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공 장학생 <input type="checkbox"/>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부동산	동산	년수입	기타	비고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소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판매소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로(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소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내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로(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p>「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체대표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각 1부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p>※ 신청서 기재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 ①사회복지분야 ②보건·의료·보육분야 ③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④교육분야 ⑤환경분야 ⑥건설·주택분야 ⑦교통분야 ⑧정보통신분야 ⑨기타분야 * 사업규모 :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 기재 *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 단체종류 :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p>「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체대표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p>※ 신청서 기재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 ①사회복지분야 ②보건·의료·보육분야 ③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④교육분야 ⑤환경분야 ⑥건설·주택분야 ⑦교통분야 ⑧정보통신분야 ⑨기타분야 * 사업규모 :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 기재 *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 단체종류 :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비서류</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 <td style="padding: 5px;">사업자등록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서 제출서류</td> <td style="padding: 5px;">-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서류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서류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규모	⑦ 영업면적	㎡	⑧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	⑨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용자신청내역	⑩ 실소요금액		⑪ 융자신청금액	
			⑫ 비율(⑪/⑩)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		지 정 은 행
확 인 자	년 월 일	은행명
직 명 성 명	신청인 (인)	대 출 가
(인)		확인자

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규모	⑦ 영업면적	㎡	⑧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	⑨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용자신청내역	⑩ 실소요금액		⑪ 융자신청금액	
			⑫ 비율(⑪/⑩)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		지 정 은 행
확 인 자	년 월 일	은행명
직 명 성 명	신청인 (인)	대 출 가
(인)		확인자

중 구 청 장 귀 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 비 서 류</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 <td style="padding: 5px;">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제출서류</td> <td style="padding: 5px;">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10px;">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td> </tr> </table>	구 비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청인 제출서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구 비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청인 제출서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4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42조”를 “제159조”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예금 금리”를 “예금금리”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구민의 이용 편의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을 “금고업무 관리능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5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20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18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2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7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2)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의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하여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 에서 제외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 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차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만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4 .</p> <p>-----</p> <p>---</p> <p>-----</p> <p>-----</p> <p><u>제159조</u> ---</p> <p>-----</p>
<p>제4조(금고의 수 및 지정) ④ <u>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u></p>	<p>제4조(금고의 수 및 지정)</p> <p>④ <삭 제></p>
<p>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② (생략)</p> <p>1. (생략)</p> <p>2. 구에 대한 대출 및 <u>예금 금리</u></p> <p>3. <u>지역주민 이용 편의성</u></p> <p>4. <u>금고 업무 관리 능력</u></p>	<p>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구에 대한 대출 및 <u>예금금리</u></p> <p>3. <u>구민의 이용 편의성</u></p> <p>4. <u>금고업무 관리능력</u></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5. (생략) 6. <신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p>[별표 1] <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u></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평가 세부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r> <tr> <td rowspan="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 <td>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td> </tr> <tr> <td>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u>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1)</u>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u>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1)</u>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p>[별표 1] <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u></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평가 세부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r> <tr> <td rowspan="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 <td>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td> </tr> <tr> <td>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삭제>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행정안전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삭제>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행정안전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u>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1)</u>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삭제>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행정안전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현 행		개 정 안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u>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u>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u>“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u>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u>“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u>
<신 설>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현 행	개 정 안
<p>II. (생 략)</p>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p>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p> <p>1) (생 략)</p> <p>2) (생 략)</p> <p>- BIS 자기자본비율 (7점)</p>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p> <p>-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p> <p>-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p> <p>- <u>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1)</u></p> <p>※ (생 략)</p> <p>※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p> <p>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p>(생 략)</p>	<p>II. (현행과 같음)</p> <p>1. ----- ----- (25점)</p> <p>가. ----- -- (8점)</p> <p>나. ----- (17점)</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BIS 자기자본비율 (<u>안정성, 6</u> 점)</p>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p> <p>-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점)</p> <p>-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 점)</p> <p><u><삭 제></u></p> <p>※ (현행과 같음)</p> <p>※ -----, <u>행정안전부</u>----- ----- -----</p> <p>2. ----- (20 점)</p>

현 행	개 정 안
<p>나. <u>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u> (생략)</p> <p>다. (생략)</p> <p>라. <u>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u>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p>가. ----- (7점) (현행과 같음)</p> <p>나. ----- (6점)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u>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p>3. <u>구민의 이용 편의성 (20점)</u></p> <p>가. <u>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u>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u>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u>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p>3. ----- (18점)</p> <p>가. <u>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u> ----- ----- <u>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u> ----- -----</p> <p>나. ----- (5점)</p>
<p>나. 지방세 입금 수납 처리능력 (7점)</p>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8점)</p>	<p>다. ----- (6점)</p> <p>점)</p>
<p>4. <u>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u></p> <p>가. <u>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u></p>	<p>4. ----- (28점)</p> <p>가. ----- (6</p>

현 행	개 정 안
<p>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p> <p><신 설></p> <p>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p>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점) 나. ----- (8점) 다. ----- -(8점) 라. ----- ----- (6점)</p>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5. ----- ----- (7점) 가. (현행과 같음) 나. ----- (2점)</p> <p><삭 제></p> <p>6. 그 밖에 사항 (2점) 가. <u>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u> <u>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u></p>
<p><신 설></p>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앞 쪽)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3em; margin-left: 10px;">]</div> <div style="margin-left: 20px;">결정결의서</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 구 외 명 번길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영	과세표준	세율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구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액	징수비율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00세														
00세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증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p>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p>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p>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p>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2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업종)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 법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p> <p>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 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감, 을)에 따른다. <u>< 신 설 ></u></p> <p>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 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 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효완성정리</u> -----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u>정리보류 등</u>)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 ----- <u>정리보류표</u>----- -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u>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u> 및 <u>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u>에 따른다.</p> <p>제15조(지난 회계연도 <u>정리보류</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u>정리 보류를</u> ----- ----- ----- <u>정리보류 취소액</u>----- ----- ----- ----- -----</p>

현행	개정안
<p>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을 한</u>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 취소</u>하고 압류 등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p>	<p>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를 한</u> ----- ----- ----- ----- <u>정리보류를 취소</u> ----- -----.</p>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6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21-3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43-6	2022. 7. 20	신청에 따라 다산로42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68호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98호(2003.10.10.)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4호(2019.10.0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24호(2020.03.04.) 및 제2020-154호(2020.11.2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94호(2021.07.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1번지 일대
 - 면 적 : 1,976.7㎡ (대지 1,634.0㎡, 정비기반시설 34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화약품(주) 대표이사 유준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34, 6~8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 7. 20.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m ²)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1,634.0	870.1	53.25	15,819.98	624.32	지상16 / 지하5	69.9	업무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 고
성 명	주 소	토지(m ²)	건물(m ²)	용도	
동화약품(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34, 6~8층	1,634.0	15,819.98	업무시설 근생시설	

2) 체비지 시설 : 없음

3) 보류지 시설 : 없음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m ²)	설치비용 (천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m ²)	국공유지 (m ²)	무상양여 (m ²)
도로	소로1-3	8.3	151,070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	58.1	58.1	58.1
공공공지	공공공지	334.4	5,100,265						
문화집회	전시관	(749.42)	4,350,000	서울특별시					
계		342.7	시행자부담				58.1	58.1	58.1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02-3396-5774)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16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08-21 일대

다. 구역면적 : 3,239.4㎡ (대지 2,578.2㎡ / 정비기반시설 661.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뉴스퀘어 주식회사 대표 박창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21-1, 301호

마.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바. 건축계획

대지면적(m ²)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m ²)	층수	높이(m)	주용도	비고
2,578.2	57.06	652.50	26,440.20	지하5/지상 16	55.9	업무시설	

2. 공람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8. 5.(16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다. 공람내용 : 세운6-4-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17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90-1 일대

다. 구역면적 : 2,495.2㎡ (대지 1,818.3㎡ / 정비기반시설 676.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뉴스퀘어 주식회사 대표 박창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21-1, 301호

마.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바.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층수	높이(m)	주용도	비고
1,818.3	59.89	697.68	17,236.02	지하4/지상1 7	59.8	업무시설	

2. 공람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8. 5.(16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다. 공람내용 : 세운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22호

마포로5구역(중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지정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중구공고 제 2019-470호(2019.06.12)로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 1항에 따라 재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 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22. 07. 20. ~ 08. 19.)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6)

다. 공람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로5구역	충정로3가, 합동28-5번지 일대	61,194.8	증) 626.7	61,821.5	건설부고시 제345호 (‘79.9.21)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	충정로3가, 합동28-5번지 일대	· 면적변경 - 61,194.8m ² → 61,821.5m ²	· 인접지역 도로 일부 편입 및 불합리한 구역 경계 조정 · 사업실현성 및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구역경계 조정	-

3) 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기정	마포로 5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3,424.8	2,716.8	708.0	-	완료
기정	마포로 5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일대	4,565.8	3,549.0	1,016.8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일반 정비형
변경	마포로 5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일대	-	5,062.5	13.23% 이상	-	
기정	마포로 5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5일대	-	1,971.0	13.23% 이상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일반 정비형
변경	마포로 5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5일대	-	1,933.4			
신설	마포로 5	3-1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2일대	-	706.5	-	-	보전 정비형
기정	마포로 5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일대	-	3,748.0	13.23% 이상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일반 정비형
변경	마포로 5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일대	-	3,725.7			
기정	마포로 5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4	3,078.8	2,365.2	713.6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완료
기정	마포로 5	6-1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3,058.4	2,427.9	630.5	-	완료
기정	마포로 5	6-2	서대문구 합동 117일대	3,803.7	3,115.8	687.9	-	완료
기정	마포로 5	7	서대문구 합동 116	3,815.4	2,676.4	1,139.0	-	완료
기정	마포로 5	8	서대문구 합동 21-1일대	-	3,775.0	13.23% 이상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일반 정비형
변경	마포로 5	8	서대문구 합동 21-1일대	-	3,891.4			
기정	마포로 5	9-1	중구 순화동 6-12일대	1,591.6	1,591.6	-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일반 정비형
기정	마포로 5	9-2	중구 순화동 5-2	5,069.3	4,232.5	836.8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m ²)	사업계획내역(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마포로 5	10-11	중구 중림동 157-2일대	13,028.0	9,374.7	3,653.3	-	일반 정비형
기정	마포로 5	12-1	중구 중림동 500	3,913.7	3,048.3	865.4	-	완료
기정	마포로 5	12-2	중구 중림동 419	3,666.0	2,732.7	933.3	-	완료

※ 9-1지구 건축물 기부채납(406.22㎡), 10-11지구 건축물 기부채납(786.9㎡)은 공공시설 부담면적산정에서 제외함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2지구	2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일대	· 지구(획지) 경계 및 면적 조정	· 석축 등 지형여건과 지적 선 고려하여 경계 조정	-
변경 신설	3지구	3지구 3-1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5일대	· 정비수단 변경	·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정비사업 지구경계 및 정비수법 조정	-
변경	4지구	4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일대	· 사업지구 면적조정	· 면적 정정	-
변경	8지구	8지구	서대문구 합동 21-1일대	· 지구(획지) 경계 및 면적 조정	· 도시계획시설 반영하여 획지 경계 조정	-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1,194.8	증) 626.7	61,821.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842.9	감) 1,622.8	12,220.1	19.8	-	
	도 로	7,872.6	증) 73.8	7,946.4	12.8	-	
	공 원	2,828.0	-	2,828.0	4.6	중복결정 (사회복지 시설)	
	녹지	538.3	증) 246.6	784.9	1.3	-	
	장기미집행 실효부지	2,604.0	감) 1,943.2	660.8	1.1	-	
획지	소 계	47,351.9	증) 2,249.5	49,601.4	80.2	-	
	일반 정비형	1지구	2,716.8	-	2,716.8	4.4	-
		2지구	3,549.0	증) 1,513.5	5,062.5	8.2	-
		3지구	1,971.0	감) 37.6	1,933.4	3.1	-
		4지구	3,748.0	감) 22.3	3,725.7	6.0	-
		5지구	2,365.2	-	2,365.2	3.8	-
		6-1지구	2,427.9	-	2,427.9	3.9	-
		6-2지구	3,115.8	-	3,115.8	5.0	-
		7지구	2,676.4	-	2,676.4	4.3	-
		8지구	3,775.0	증) 116.4	3,891.4	6.3	-
		9-1지구	1,618.6	감) 27.0	1,591.6	2.6	-
		9-2지구	4,232.5	-	4,232.5	6.9	-
		10·11지구	9,374.7	-	9,374.7	15.2	-
		12-1지구	3,048.3	-	3,048.3	4.9	-
		12-2지구	2,732.7	-	2,732.7	4.4	-
보전정비형	3-1지구	-	증) 706.5	706.5	1.2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서울시고시 제2020-81, 125호)를 반영한 사항임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1,194.8	증) 626.7	61,821.5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7	-	40.7	0.1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56.2	증) 335.2	1,991.4	3.2	-
준주거지역	51,512.8	증) 269.6	51,782.4	83.8	-
일반상업지역	7,985.1	증) 21.9	8,007.0	12.9	-

※ 2지구 구역계 확대부분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면적 : 333.7m²)

※ 위의 변경사항 외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구역계 변경 및 공부상 면적으로의 보정에 의한 변경사

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 지구	서대문~마포간	85,752.0	-	-
기정	-	방화 지구	태평로2가~아현동간	28,980.0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4	30~4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340 (54)	중구 태평로2가 340-6	서대문구 충정로3가 44-1	-	-	-
기정	소로	1	19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83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7-2	서대문구 충정로3가 240-15	-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2	19	6~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82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7-4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7	-	-	-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61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2	-	-	-
기정	소로	1	20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4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2	-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6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4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1	-	-	-
기정	소로	1	21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50	서대문구 충정로3가 323-2	서대문구 합동 116-3	-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1	21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45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8	서대문구 합동 116-1	-	-	-
기정	소로	1	22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1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2	-	-	-
기정	소로	1	23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5	중구 중림동 500-4	중구 중림동 419-5	-	-	-
기정	소로	1	24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2 (63)	중구 중림동 500-5	중구 중림동 155-4	-	-	-
기정	소로	1	177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18	중구 중림동 156-90	중구 중림동 156-78	-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7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서대문구 미근동 320	-	서울시고시 제76호 (‘69.09.20.)	-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7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서대문구 합동 115-3	-	-	도로선형 변경
신설	소로	3	98	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1	서대문구 충정로3가 353-4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7	-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2) 도로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9	소로 2-19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 10m → 6~8m - 연장 : 283m → 82m	· 근현대 건축자산(총정각) 보전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 3-19	· 도로 선형 변경 - 연장 : 283m → 32m - 폭원 : 10m → 6m	· 근현대 건축자산(총정각) 보전에 따른 분할된 도로선형 변경
소로 1-20	소로 2-20	· 도로 선형(중점) 및 폭원변경 - 연장 : 32m → 46m - 폭원 : 10m → 8m	· 지형현황 및 공공재개발구역 도로 연계를 위한 선형 변경
소로 1-21	소로 1-21	· 도로 선형 및 연장변경 - 연장 : 350m → 345m	· 기존 소로 1-19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소로 3-	소로 3-	· 도로 선형 변경	· 지적 고려 및 녹지결정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소로 3-98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41m	· 현황도로의 시설 결정

(3) 도시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철도	도시철도 (총정로정차장)	서대문구 총정로3가 58번지 일대	6,267.0	-	6,267.0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정차장 지하 2층에 부대시설 설치
기정	철도	-	중구 중림동 158 일원	326.0	-	326.0	서울시고시 제2021-265 호 ('21.6.10.)	건축물 내 건폐면적 : 326.0㎡

※ 길이, 폭,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철도	-	중구 중림동 158 일원	길이(m)	23.8	-	23.8	서울시고시 제2021-265호 ('21.6.10.)	건축물 내 건폐면적 : 326.0㎡
				폭(m)	6.0	-	6.0		
				면적(㎡)	326.0	-	326.0		

※ 철도도로의 길이, 폭,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중림 공원	어린이 공원	중구 중림동 157-2	2,828.0	-	2,828.0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공원 위치 변경 및 사회복지시설과 중복 (관리청 : 중구청)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충정로 제1녹지	기타녹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3	536.0	감) 25.5	510.5	-	-
변경	②	미근 제2녹지	완충녹지	서대문구 미근동 320	2.3	증) 272.1	274.4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미집 행 구간 의 실효

(3)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면적 변경	· 공부상 면적으로 보정
②	녹지	· 면적 변경	· 무허가로 입지한 건축물의 장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소유관계(시유지) 등을 고려하여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 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사회복 지시설	-	중구 중림동 156-71번지 일대	부지면적 : - 연면적 : 2,965㎡	서울시고시 제2021-265호 (‘21.6.10.)	공원하부에 중복결정 (관리청 : 서울특별시)

※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세부용도에
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계획

- 가) ○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평균 부담률 변경 : 13.23% 이상 (보전정비형 제외)
- 지구별로 잔여 정비기반시설 의무 부담 위치지정
(2지구 0.73% / 3·4지구 13.23% / 8지구 11.93%)
 - ※ 부담률은 추후 측량결과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의무 부담량 부족 또는 공공재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편입 등에 의해 정비기반시설만으로 평균부담률에 못미치는 경우 도심지주택 공급 및 지역 필요시설 고려한 건축물 등으로 확보

마.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 2, 3, 4, 5, 6-1, 6-2, 7, 8, 9-1, 9-2, 10-11, 12-1, 12-2지구	·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보전정비지구 (보전정비형)	· 3-1지구	·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획지계획 조정

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1) 일반정비지구

구분	지구	주용도	비고
일반정비지구	· 1, 5, 6-2, 7, 9-2, 12-1, 12-2지구	업무	완료지구
	· 6-1지구	주거	완료지구
	· 2, 3, 4, 8, 9-1, 10-11지구	기본계획상 주용도 선택 가능	시행지구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용도 내에서 선택 가능 : 업무, 판매, 근린생활, 주거, 숙박

2) 보전정비지구(보전정비형)

구분	지구	주용도	비고
보전정비지구 (보전정비형)	· 3-1지구	문화시설 권장, 기본계획상 주용도 선택 가능	-

※ 문화시설을 권장하나,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용도 내에서 선택 가능 (업무, 판매, 근린생활, 주거, 숙박)

사.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분	건폐율(%)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
준주거지역	6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적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보전정비형을 적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건폐율 범위 내 완화가능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α	-
준주거지역	300	400	α	
일반상업지역	600	800	α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적용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적용함

※ 완료지구의 용적률계획은 최종 고시내용에 따름

(이하여백)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요건 및 부여량_마포지역>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p><친환경개발 기준 : 일반상업지역 예시></p> <table border="1"> <tr> <td>연면적 구분</td> <td>1만㎡ 이상</td> <td>3천㎡ 이상 ~1만㎡미만</td> <td>3천㎡미만</td> </tr> <tr> <td>녹색건축물</td> <td>그린1등급 (최우수)</td> <td>그린2등급 (우수)</td> <td>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td> </tr> <tr> <td>에너지총량</td> <td>240 (kWh/㎡·y)</td> <td>260 (kWh/㎡·y)</td> <td></td> </tr> <tr> <td>신재생 에너지</td> <td>11% 이상(비주거) 7% 이상(주거)</td> <td>10% 이상(비주거) 6.5% 이상(주거)</td> <td></td> </tr> </table> <p>※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에너지총량을 줄인만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성능대체비율에 따라 완화가 가능</p>	연면적 구분	1만㎡ 이상	3천㎡ 이상 ~1만㎡미만	3천㎡미만	녹색건축물	그린1등급 (최우수)	그린2등급 (우수)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에너지총량	240 (kWh/㎡·y)	260 (kWh/㎡·y)		신재생 에너지	11% 이상(비주거) 7% 이상(주거)	10% 이상(비주거) 6.5% 이상(주거)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연면적 구분	1만㎡ 이상	3천㎡ 이상 ~1만㎡미만	3천㎡미만																	
녹색건축물	그린1등급 (최우수)	그린2등급 (우수)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에너지총량	240 (kWh/㎡·y)	260 (kWh/㎡·y)																			
신재생 에너지	11% 이상(비주거) 7% 이상(주거)	10% 이상(비주거) 6.5% 이상(주거)																			
역사 보전	옛길/물길 복원 및 재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역사흔적 남기기	·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지침(Guideline)에 적합하게 조성 시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시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 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량 부여 정률 부여	50% 0.25	최대 50%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 업무전용빌딩(업무시설 50% 이상 복합하는 경우에 한함) 설치시(단, 오피스텔 제외) · 사회혁신창조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도입시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사회혁신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 시	업무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50%	정률 부여	0.25 최대 10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등	· 도서관, 주차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야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5	최대 50%															
	주거안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전용 60㎡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 (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도입시	정률 부여	0.1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실내 공개공지	·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시 (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정량 부여	30%	최대 50%															
		무장애도시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2	최대 3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주변지역 침수 및 화재방지를 위한 기역시설 설치 등)	정량 부여	30%	최대 30%																

※ 지역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의 허용 인센티브 항목 추가 적용 가능

※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 호텔 도입시 인센티브 적용기준

-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 : 관련법규 및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요건 및 부여량_한양도성 도심지역>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p><친환경개발 기준 : 일반상업지역 예시></p> <table border="1"> <tr> <td>연면적 구분</td> <td>1만㎡ 이상</td> <td>3천㎡이상 ~1만㎡미만</td> <td>3천㎡미만</td> </tr> <tr> <td>녹색건축물</td> <td>그린1등급 (최우수)</td> <td>그린2등급 (우수)</td> <td>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td> </tr> <tr> <td>에너지총량</td> <td>240 (kWh/㎡·y)</td> <td>260 (kWh/㎡·y)</td> <td></td> </tr> <tr> <td>신재생 에너지</td> <td>11% 이상(비주거) 7% 이상(주거)</td> <td>10% 이상(비주거) 6.5% 이상(주거)</td> <td></td> </tr> </table> <p>※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에너지총량을 줄인만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성능대체비율에 따라 완화 가능</p>	연면적 구분	1만㎡ 이상	3천㎡이상 ~1만㎡미만	3천㎡미만	녹색건축물	그린1등급 (최우수)	그린2등급 (우수)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에너지총량	240 (kWh/㎡·y)	260 (kWh/㎡·y)		신재생 에너지	11% 이상(비주거) 7% 이상(주거)	10% 이상(비주거) 6.5% 이상(주거)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연면적 구분	1만㎡ 이상	3천㎡이상 ~1만㎡미만	3천㎡미만																		
	녹색건축물	그린1등급 (최우수)	그린2등급 (우수)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에너지총량	240 (kWh/㎡·y)	260 (kWh/㎡·y)																				
신재생 에너지	11% 이상(비주거) 7% 이상(주거)	10% 이상(비주거) 6.5% 이상(주거)																				
역사 보전	옛길/물길 복원 및 재현	·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지침(Guideline)에 적합하게 조성 시	· 정량 부여	50%	최대 50%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시	· 정률 부여	0.25																		
	역사흔적 남기기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 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상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 정률 부여	0.25	최대 100%																	
		·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시																				
		·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 시설 도입 시																				
		· 관광진흥법 상 1등급 호텔이상 도입시	· 호텔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 업무전문빌딩(업무시설 50% 이상 복합하는 경우에 한함) 설치시(단, 오피스텔 제외)	· 업무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50%																			
계획 유도	생활SOC 문화인프라	· 도서관, 주차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 자리창출공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 정률 부여	0.1	최대 30%																	
	주거안정	·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전용 60㎡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 정량 부여	50%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 (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도입시	· 정률 부여	0.1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실내 공개공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시 (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 정량 부여	30%	최대 50%																
		무장애도시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 정률 부여	2		최대 3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주변지역 침수 및 화재방지를 위한 기역시설 설치 등)	· 정량 부여	30%	최대 30%																	

※ 지역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의 허용 인센티브 항목 추가 적용 가능

※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 보상계수

4)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높이	비고
일반정비지구	1, 5, 6-1, 6-2, 7, 9-2, 12-1, 12-2지구	70m이하	완료지구
	2, 3, 4, 8, 9-1, 10·11지구		시행지구
보전정비지구 (보전정비형)	3-1지구	70m이하	시행지구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90m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 완화 가능

아.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간선도로변 (서소문로 및 충정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서소문로 일부구간(10·11지구)	-
		이면도로 일부구간 (2, 9-1, 10·11지구)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
				-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2지구	·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으로 4m 이상으로 조성 - 단, 공공재개발 사업 완료(준공) 시까지 일부 구간 맹지 해소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운영	-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

자. 기타사항

○ 충정로1 공공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지침(안) 제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이면도로 간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편의를 위해 마포로 5-2지구 남측 이면도로와 연결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차혼용통로로 운영
- 단,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충정로-서소문로를 연계하는 도로 확보 시 공공재개발구역 내부 보차혼용통로 필요성 재검토를 통해 운영방식 전환 검토

차. 관계도서

- 1) 기타 정비계획 내용 및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된 도서로 같습니다.